

청주교육대학교 기획처 규정

제 정 2005. 5. 12. 규칙 제1126호
전부개정 2008. 5. 27. 규칙 제1200호
1차 개정 2009. 5. 27. 규칙 제1226호
2차 개정 2010. 10.19. 규칙 제1242호
3차 개정 2014. 9. 18. 규칙 제1352호
4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9. 18.)

제2조(조직) ① 기획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기획처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③ 기획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1.)

1.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2. 주요 사업의 심사분석과 교내외 평가
3. 예산의 기획 및 결산의 심사
4. 대외교류협력의 기획
5. 국내외 대학·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6. 대학홍보
7.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청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 관리
8. 주요 통계의 수집·관리
9. 총장이 지정하는 외부 재정지원사업 관리 (개정 2020.5.11.)
10.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개정 2020.5.1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개정 2020.5.11.)
12. 기타 기획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0.5.11.)

제2조의 2(다문화교육센터 설치 운영) <삭 제> (개정 2014. 09. 18.)

제2조의 3(국제교류센터 설치 운영) ① 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10.19.)

② 센터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기획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10.19.)

③ 센터는 국제교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0.10.19.)

1. 국제교류에 관한 기획 및 업무 지원

2. 원어민 강사의 임용, 활용, 복무관리 및 교육활동의 지원
 3. 학생 및 교직원의 외국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4. 기타 국제교육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④ 센터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0.10.19.)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한다.(신설 2010.10.19.)
1. 전담교수를 포함한 우리대학 전임교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기획처장이 위촉한다.
 2.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0.10.19.)

제3조(연구위원회) ① 기획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위원회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회의 명칭, 구성 방식, 임무에 관해서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때 총장이 정한다.

제4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획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7. 전부개정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7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9.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9. 18. 제13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제15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